중동 경남아너스빌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매각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매각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4.05.1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번 공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는 중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준공 : 2012년)의 재개발매입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발생한 공가세대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리공사(LH)가 2012년도에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도시가스, 샷시, 수도,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키,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u>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u>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u>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u> <u>할 수 없습니다.</u>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u>매각공고일(2024.05.17)</u>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금번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미접수)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u>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u>,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u>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u>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mark>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mark>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 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일정 (서류접수처 및 상세일정 공고문 하단 참조)

용고 (온라인모바일) (충 2024.05.17(글) 2024.05.29(수)~05.30(목) 202				서류접수(우편) (당첨자 및 예비자)	주택열람 (당첨된 동·호)	계 약 체 결 (계약대상자)	
		2024.05.31(금) 14:00이후	2024.06.10(월) ~ 06.12(수)	계약대상자 개별안내 (6월중)	2024.06.28.(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24.06.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중동 경남아너스빌 (해운대구 해운대로 732)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4)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32 (중동 1788)

■ 공급호수 : 6호

Ι

			세대 당 계약면적(m²)			분양가격(원)			최고	난방				
단지	동	호	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	합계	계	계약금(10%)	융자금	잔금	최고 층수	방식	준공
	103	6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		
	103	8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고도 20 지역	
중동경남	103	11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25~28		2012
아너스빌	103	12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00 	난방	2012
	103	18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103	20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32,500,000	33,250,000	55,000,000	244,250,00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 × 0.3025 또는 m'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 분양대금 납부 방법

■ 분양대금은 "①계약금 + ②융자금 + ③잔금"과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 561801-95-2003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 ① 계약 금: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② 융 자 금 : ^①LH에 일시납 또는 ^②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 융자금이란 주택가격 중 LH가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한 금액입니다. 해당금액은 분양계약자가 대환(융자금의 차용인명의를 LH→계약 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잔금과 함께 LH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됩니다. 융자금 일시납세대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 관리하는 지정은행 [우리은행 마린시티금융센터점 🛪051-747-9701(내선521)]으로 문의하시기 비랍니다.
- 대환대출 이자비용 납부의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진행하며, 원하시는 잔** 금납부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지정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하므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함 (융자금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③ 잔금: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u>연체이율이</u>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관리비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능하며, 관리비는 세대 비밀번호 개별 안내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내 미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4.05.17)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됨)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 증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m I\hspace{-.1em}I\hspace{-.1em}I}$

- 공급호수의 2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05.3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소유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IV

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무순위	2024.05.29.(수)~05.30.(목)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to 공동인증서 로그인 \to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to 지구 선택 \to 주택형 선택 \to 일 반공급신청 구분 선택 \to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to 청약신청서 작성 \to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예비자 포함)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접수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예비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u>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u>하며, 계약체결일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합니다.

구분	당첨자(예비자) 발표 우편 서류제출(당첨자,예비자)		주택개방	계약체결	
일시	2024.05.31.(금) 14:00이후	2024.06.10.(월) ~ 2024.06.12.(수) ※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계약대상자 개별안내 (6월중)	2024.06.28.(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수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중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to 청약 \to 청약결과 확인 \to 당첨/낙찰 결과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계약체결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당첨자 제출서류

■ 안내사항

- 당첨자(예비자포함)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4.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mark>전부표기</mark>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매각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매각공고일(2024.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mark>전부표기</mark>로 발급]

서	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 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Ο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안)가 서명함 양식 첨부파일 참조 				
0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0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0		⑤ 신분증 사본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0		⑥ 무주택 서약서	본인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양식 첨부파일 참조				
0		⑦ 주택상태확인서	본인	• 계약체결일에 현장에서 작성 후 제출(계약 장소에 비치),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계약시 구비서류

VI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2024.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현금수납 불가) ※ 계약자명으로 입금 ※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계약 시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 가능)
제3자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u>'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u>
대리계약 시 추가 서류	①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 날인)
-본인 계약 시 서류와 함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계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제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 당첨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 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2. 주택개방 및 열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및「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u>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u> <u>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가·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u> 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열람 : 동호 배정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 <u>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u>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 · 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 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mark>일 이내</mark>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완납 전에는 사전 입주 및 세대 비밀번호 교부가 불가함으로, 이사 및 인테리어 시공 등 일정 조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u>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u>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체결 장소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교변 성성 발급 생명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1호선 부산역 삼성생명 옆(10번 출구)

분양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2024. 05.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